

-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0월 13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0월 19일

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도시건설국장 천 동 성

나. 제안이유

- 부동산중개업 제37조의3, 제37조의4, 제3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42조, 제43조,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개정으로 구미시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설치근거가 삭제된바 구미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

라. 참고사항

-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, 제37조의4, 제37조의5(법률제6236호 일부 개정 2000. 1. 28) 및 동법시행령 제42조, 제43조, 제44조(대통령령 제16837호 일부개정 2000. 6. 7)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(2000. 7. 29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윤 구

- 부동산중개업 관련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'95. 1. 1 제정된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조례제정 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2000. 1. 28과 2000. 6. 7 개정 및 삭제되었고
- 또한 동 조례 제정 이후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 조례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는 등 사문 화되어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
- 따라서 현행조례는 폐지하고, 부동산 중개에 따른 당사자간의 다툼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기타 민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